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군인권보호관 겸직 변경〉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91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원장·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3
2.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겸직	11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원 · 조계원 · 박용갑 · 민병덕 · 민형배 · 안태준
송재봉 · 윤건영 · 문대림 · 최민희 · 오세희 · 이광희
소병훈 · 임미애 · 한정애 · 서미화 · 이개호 · 박홍배
서영교 · 권향엽 · 허 영 의원(21인)

2. 제 안 일 : 2025. 3. 6.

3. 회 부 일 : 2025. 3. 7.

※ 의안번호 : 869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은 국회 선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 위원 일부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쉬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에서 군의 인권 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의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등).

Ⅲ. 검토의견

1. 위원장·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② 위원의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5호).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 <u>탄핵 또는 금고</u> ----- ----- -----, ----- ----- ----- -----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② (현행과 같음)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임.¹⁾

헌법 제65조²⁾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함.³⁾

현행법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를 살펴보면,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은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는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⁴⁾을 두고 있음.

1)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결정

2)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표-2] 헌법 및 개별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 및 근거

구 분	대 상	근 거
헌법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직접적 근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및 제16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간접적 근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별 법률에 따른 탄핵소추 대상 직위 중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직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⁵⁾로서,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는 않음.

[표-3] 개별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의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입법례

대 상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원 포함)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위원 포함)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검사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장관급) 및 상임위원 3명(차관급)과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 7명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②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③ 비상임위원

5)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은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⁷⁾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인 정책권고,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당연퇴직 사유)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퇴직 사유)된 경우가 아니면 당연퇴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그 신분을 보장⁹⁾받고 있음.

개정안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구 분	내 용
정책권고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표명
조사·구제	◦ 국가기관(지자체, 학교 포함),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 조사·구제
교육·홍보	◦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국내외협력	◦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구성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에 대한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국회의 민주적이고 대의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탄핵소추 근거 마련 여부 및 대상 직위 범위,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관과의 균형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¹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와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②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3명)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상임위원(1명) 및 비상임위원(7명)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없음.

10)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음.

[표-4] 국가인권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정원	11명	5명	9명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탄핵소추 대상 (개정안)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위원장	위원장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개정안)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특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인 비상임위원 7명의 경우, 헌법 제65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탄핵소추 대상을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명시¹¹⁾하고 있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음. 이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11)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표-5]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 소추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침해적인 성격의 진정 소급입법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¹²⁾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¹³⁾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진정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그 공익상 이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및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⁴⁾

12)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p.36

13)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결정

14) 위원장·상임위원 탄핵소추 및 탄핵결정 결격사유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78	윤종균의원	위원장·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추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	강유정의의원	위원장·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가

2.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겸직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 중 국 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¹⁵⁾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음.¹⁶⁾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면서,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16) 2016. 6.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15. 12. 29. 제정)되어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2022. 1. 4. 일부개정)되어 군인권보호관의 조직·업무 및 운영 관련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회, 긴급구제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7]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및 권한

구 분		주요내용
조 직	군인권보호관	○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 ○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 침해예방 등 수행하는 소위원회
	지원조직	○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설치 ¹⁷⁾
권 한	진정사건 조사	○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	○ 사망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 입회 요구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 조치)	○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참고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2022. 7. 1. 이후 2024. 12. 31.까지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 사망사건 수사 입회 현황, 긴급구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3회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51건의 사망사건 통보에 대하여 143건 입회하였으며 4건의 긴급구제를 처리하였음.

[표-8]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2022. 7. 1. ~ 2024. 12. 31.)¹⁸⁾

연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과
1	22-방문-0000400	'22. 8. 23.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권고	종결
2	23-방문-0000100	'23. 2. 28.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종결

17)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3개 과단위 조직으로 구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18)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실시되었는데, 2020년에 1회(사건명: 2020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2021년에 1회(사건명: 2021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실시되었음.

연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과
3	23-방문-0000600	'23. 5. 30.	해군 격오지(함정) 방문조사	종결
4	23-방문-0000900	'23. 8. 29.	2023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종결
5	23-방문-0001000	'23. 9. 26.	군기교육대 방문조사	종결
6	23-방문-0001100	'23. 11. 28.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공군, 육군)	종결
7	24-방문-0000400	'24. 2. 29.	육군사관학교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8	24-방문-0000500	'24. 3. 29.	해병대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9	24-방문-0000700	'24. 4. 30.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GOP)	종결
10	24-방문-0000800	'24. 6. 25.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종결
11	24-방문-0001000	'24. 7. 23.	공군 격오지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12	24-방문-0001100	'24. 7. 23.	2024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종결
13	24-방문-0001300	'24. 11. 27.	제17전투비행단 전대장 성폭력 등 방문조사	종결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표-9] 사망사건 통보 및 입회 현황(2022. 7. 1. ~ 2024. 12. 31.)

(단위: 건)

구 분	사망사건 통보					위원회 대응			
	자해 사망	병사	사고사	기타	소계	입회	기초 조사	소계	진정 접수
'22.7.1.~12.31.	35	26	19	-	80	28	52	80	10 (직권 1)
'23.1.1.~12.31.	68	41	16	1	126	53	73	126	9 (직권 1)
'24.1.1.~12.31.	77	46	21	1	145	62	83	145	7
계	180	113	56	2	351	143	208	351	2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표-10] 긴급구제 처리 현황(2022. 7. 1. ~ 2024. 12. 31.)¹⁹⁾

연도	사건번호	제목	종결일	결과
2022	22-긴급-0001100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	'22. 8. 16.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3	23-긴급-0002000	군인 사망사건 군수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23. 8. 18.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0900	군 지휘관의 부당 처우 및 인권침해 등	'25. 1. 9.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1700	예비군 동원 보류자의 예비역 진급대상 제외 부당	'24. 8. 5.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군인권보호관이 구조적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에서 군인권 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높아 군인권보호관이 독립된 인권기구로서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⁰⁾

이에 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지명
하는 상임위원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군인
권보호관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
무를 보다 독립적·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
지로 이해됨.

19) 긴급구제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처리되었는데, 2020년에 1건(군 복무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1년에 1건(군인, 부당 전출명령 및
강제이주 상황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하지 않음) 처리되었음.

20) 이승택, 「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법학연구 제24권제1호(2024. 3.), p.114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인권보호관의 지위 및 임명 문제는 제21대국회에서 군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할 당시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안’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하는 안’을 병합 심사하였는데,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선출하게 되면 결국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²¹⁾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었음.

[표-11] 제21대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위·임명 관련 개정안 내용

조승래의원안	배진교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위원 2명 증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 (위원 2명 증원)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변경할지 여부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당시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사

2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록(2021. 11. 29.), p.4
발언 취지 및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을 정리하였음.

항 등과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 3명 중 국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선출²²⁾하고 있어 국회 선출 상임위원 2명 중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는 것인지 법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국회 선출 몫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음.²³⁾

또한, 국회에서 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경우 통상 소속 국회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와 그 다음으로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로부터 후보자를 각각 추천받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고 있는데,²⁴⁾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 중 어느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23) 이수진의원안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24) 가장 최근 국회 선출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였음.

것으로 보임.

셋째,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상임위원 그 자체가 아니라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인권보호관이므로 그 적용 대상은 군인권보호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정안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과거인 ‘시행 이전’이 아닌 현재의 ‘시행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에 맞추어 법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12] 개정안 부칙

부 칙
제3조(군인권보호관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017

참고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2022. 7. ~ 2024. 12.)

□ 2022년 7월 ~ 12월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1차	2022. 7. 1.	박찬운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1	1	-
2차	2022. 7. 26.		28	6	22
3차	2022. 8. 23.		14	4	10
4차	2022. 9. 23.		42	2	40
5차	2022. 10. 20.		20	6	14
6차	2022. 11. 15.		22	4	18
7차	2022. 12. 20.		29	9	20
합계			156	32	124

□ 2023년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1차	2023. 1. 3.	박찬운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1	0	1
2차	2023. 1. 31.		25	6	19
3차	2023. 2. 28.		30	5	25
4차	2023. 4. 4.	김용원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56	11	45
5차	2023. 4. 28.		31	7	24
6차	2023. 5. 30.		27	7	20
7차	2023. 6. 28.		39	9	30
8차	2023. 7. 25.	김용원 위원장 원민경 위원 한석훈 위원	34	7	27
9차	2023. 8. 9.		1	0	1
10차	2023. 8. 29.		26	10	16
11차	2023. 9. 26.		16	3	13
12차	2023. 10. 24.		22	5	17
13차	2023. 11. 28.		33	3	30
14차	2023. 12. 27.		19	5	14
합계			360	78	282

□ 2024년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전	의결안전
1차	2024. 1. 30.	김용원 위원장 원민경 위원 한석훈 위원	46	6	40
2차	2024. 2. 28.		31	3	28
3차	2024. 3. 29.		24	2	22
4차	2024. 4. 30.		23	8	15
5차	2024. 6. 4.		31	6	25
6차	2024. 6. 25.		39	7	32
7차	2024. 7. 23.		12	4	8
8차	2024. 9. 11.		49	10	39
9차	2024. 9. 24.		5	0	5
10차	2024. 10. 23.		32	5	27
11차	2024. 11. 27.		33	4	29
합계			325	55	27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